제22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신업건설위원회(2016.12.6.)

조례안 등 검토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차 상 욱]

목 차

1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5
4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8
5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36

의안번호 제2016 - 92호

─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6. 11. 2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이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나 부담을 주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명과 용어 변경
 - (개정)거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재래시장(등록시장, 인정시장) ⇒ 전통시장
 - 시장 활성화구역 ⇒ 상권 활성화구역
-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안 제16조・제17조)
 - 등록 ⇒ 신고
- 라.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조항 삭제(안 제8조~제10조·제26조·제30조·제33조)
 -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상인회의 등록취소,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 마. 상위법령과 불부합, 법령 개정 미반영 조항 삭제 및 정비 (안 제2조·제11조, 제9장)
 - 법에서 정의한 용어 삭제: 재래시장, 임시시장, 상점가 등
 -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 조항 삭제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 삭제 등
- 바. 영구법화에 따른 유효기간 삭제(부칙 제2조)
-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bigcirc 정의 \Rightarrow 뜻, 자 \Rightarrow 사람, 생략 \Rightarrow 현행과 같음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9. 30. ~ 10.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 및 상위법령과 불부합 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10호, 2016.3.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 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하다)가 승인・고시하 구

역을 말한다.

-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 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 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 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
 - 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u>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

- 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상권활성화구역 <u>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19조의6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 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 · 불만의 처리
 -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74조(과대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5.28.>
 -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5.28.>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23호, 2016.9.29., 일부개정]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개정 2013.6.11.>

-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13.6.11.>
-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구역이 제1항·제2항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 2. 삭제 <2013.6.11.>
- 3.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군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산업통상자원부령</u>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1.>
-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개정 2016.1.22.>
 -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 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 · 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20.> **[전문개정 2009.10.7.]**

[개정 전]

-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개정 2008.2.29.>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9.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9호, 2016.9.30., 일부개정]

-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12.>
 -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특성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30.>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4.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016 - 93호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6. 11. 2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주차장법」개정 등에 따라 계약방법, 가산금 부과대상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신설(안 제2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
- 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설(안 제2조의3)
 -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
- 다.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가산금 부과대상 정비(안 제3조)
 -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
 - ※「주차장법」제9조에서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서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임

- 라. 수탁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정방법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 삭제(안 제6조)
- 마. 주차요금 50퍼센트 감경대상 추가(안 제9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경남!다누리카드 소지자
- 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안 제12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되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은 "3퍼센트"로 한다.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경상남도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지원 조례」
-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환경과(자연환경담당)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0. 28. ~ 11.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반영(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설)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 O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설 (안 제2조)
 - 가산금 부과대상 정비(안 제3조)
 - 수탁자의 자격 근거 명확화 및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 삭제(안 제6조)
 -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대상 추가(안 제9조)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안 제12조) 등을 개정하였음.
-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주차장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804호, 2016.1.19., 일부개정]

-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 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2.]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10.3.22.]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 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전문개정 2010.3.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7.27., 일부개정]

-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따라 설정한다.
 -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 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5.>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10.29.]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 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 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u>설치하여야</u> 한다.
 -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29.]

-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 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 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 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 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 되다.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의 부분
 -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 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u>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u>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4.]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 ·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
 -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10.2.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9.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9.29., 타법개정]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 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 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 ·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 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 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 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렁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하는 경우
 -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 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 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 대하는 경우
-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4.11.24.>
-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전문개정 2010.7.26.]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 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 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경상남도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지원조례」
- 제4조(지원사업 대상) 도지사는 저출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2. 모자보건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 3. 보육지원사업
- 4. 그 밖에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모자보건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97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2. ~ 12. (생략)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의안번호 제2016 - 94호

□ 거창군 주택시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6. 11. 2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폐지이유

O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하였으나, 2011년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는 등 특별회계 운영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거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주택법」제84조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1. 3. ~ 11.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O 농어촌주택사업 및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1980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하였으나, 2012년 말 융자금 상환이 만료되었으며,
- 농어촌주택사업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어 창원시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폐지 하였음.
- O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 만료 등으로 운영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자체 부담금
-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 1.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2. 성과 목표 및 지표
- 3.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 4.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 5.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6.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 7.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8.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9.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10.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 11.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안번호 제2016 - 95호

─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_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6. 11. 2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개정이유

○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택법」 에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분법·제정('16.8.12)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명과 목적 변경(제명, 안 제1조)
 - 조례명: 거창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 목 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근 거: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제3항
 -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 정비(안 제2조, 제8조제1항)

- 적용범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으므로 삭제
- 분쟁조정 신청 근거 명문화로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 신청요건 삭제

다. 상위법령 재기재・확인에 불과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4)

-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기능
- 근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기능), 제87조(구성)

다. 대표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11. 3. ~ 11.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체계적 ·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택법」에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 8. 12. 분법 · 제정됨에 따라,
- O 법령에 맞게 그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이며,
- O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4093호, 2016.3.22., 타법개정]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⑥ (생 략)

-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⑧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⑤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

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군·구(자치구를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 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 제72조(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2.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 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 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제1 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 정한다.
-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

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보궐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u>해촉</u>되지 아니할 권리는 제40조제3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 대행은 제40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8항 중 "분과위원장"은 "위원"으로 본다.
- (5)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 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 처리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u>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u>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u>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정하며, 지방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10.25., 타법개정]

-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16.8.12 분법·제정 이전]

□「주택법」

[시행 2016.3.22.] [법률 제14093호, 2016.3.22., 일부개정]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과 관리방법 등

-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16., 2012.1.26.>
 -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4.>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 ③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6., 2012.1.26.>
 -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11.30., 2009.3.18., 2009.6.30., 2009.7.31., 2010.7.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

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4.4.24., 2014.11.4., 2015.12.28.>

-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 · 보관에 관한 사항
-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 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 5.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 6.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에 관한 사항
- 8.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 9.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3.12.4., 2014.11.4.>
-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의2,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의안번호 제2016 - 100호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6. 11. 25.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6. 11. 25.

2. 제안이유

○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 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함.

3. 위탁개요

O 시 설 명: 거창천적생태과학관

O 위 치: 사과테마파크 부지 내(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Ο 규 모

· 천적생태과학관: 1,040㎡(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사육온실: 2동(432m²)

·곤충체험 및 사육온실: 2동 484㎡

• 천적사육온실 주변 조경시설물

- O 위탁업무 범위
 - · 천적 생태과학관 시설물 및 전시시설 유지 · 관리
 - · 천적교육 및 전시 · 홍보와 천적곤충표본 제작
 - 천적사육온실 관리 및 천적생산 공급
 - · 곤충체험 · 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시설물 관리
- O 그간의 추진경위
 - 2011. 10. 25.: 천적생태과학관 개관
 - 2012. 1.: 천적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2012. 3.: 학교 밖 창의체험기관으로 선정
 - · 2013. 9. ~ 현재: 천적 생산 및 공급(4품목 18,000병)
 - · 2014. 9.: 16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 2015. 2.: 천적생산 및 보급을 위한 온실 1동(240 m²) 준공
 - 2016. 6.: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
 - 2011. ~ 현재: 방문객 현황(95,550명)
- O 운영계획: 재위탁 운영
 - · 수탁기관: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대표이사 구덕서)
 - · 위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3년간)
 - · 위탁내용: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시설관리 및 천적생산 농가 공급

4. 참고사항

- O 관계법령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 O 소요예산
 - · 위탁운영비(군비) 2017년 본예산 반영: 190,000천원
 - · 과학관 운영: 경남 과학교실 운영사업 도비 신청(20,000천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16.12.31.) 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과학관의 운영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수탁기관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대표이사 구덕서)와 3회 재위탁에 따른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재위탁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위탁(예정)기간

- · 1회: 2011. 10. 25. ~ 2013. 11. 30.
- · 2회: 2013. 12. 1. ~ 2016. 12. 31.
- 3회(예정): 2017. 1. 10. ~ 2019. 12. 31.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 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전문개정 2013.1.23.]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전문개정 2011.6.7.]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위탁)

-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